<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628]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 7. 13] www.mega-mgccoffee.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02-20] 대표이메일
mgc@annhouse.co.kr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앤하우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앤하우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18, 11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335-065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325-519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588-0656]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앤하우스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외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18, 11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 11. 30.	2010. 12. 1.	김대영	02-335-0656	02-325-5199
	법인등록번호	110111-4481836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36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등기임원 (사내이사)	김대영 강민석 신방섭 송혁진 김금희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외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18, 11층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영	02-335-0656	02-325-51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등기임원 (감사)	김병찬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외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18, 11층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영	02-335-0656	02-325-51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비등기 임원	이종원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외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18, 11층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영	02-335-0656	02-325-519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
상 호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OO점	-
상표(서비스표)	MEGA MGC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529970000
광 고		-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로고	MEGA MGC COFFEE BIG SIZE 2SHOT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19년	24,323,885	6,152,297	18,171,587	35,019,820	18,328,333	14,918,851
2020년	46,155,201	10,227,064	35,928,136	60,087,318	27,106,586	21,426,410
2021년	70,678,804	23,959,806	46,718,998	87,890,993	42,236,550	33,790,861

별첨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으로 '앤하우스', '파시야',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를 운영중에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매출액과 당사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단, '앤하우스', '파시야',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의 매

출액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대영	대표이사	2021. 07.~현재	㈜앤하우스 운영	경영 총괄
	강민석	사내이사	2021. 07.~현재	㈜앤하우스 운영	이사
	신방섭	사내이사	2021. 12.~현재	㈜앤하우스 운영	이사
	송혁진	사내이사	2022. 03.~현재	㈜앤하우스 운영	이사
	김금희	사내이사	2022. 03.~현재	㈜앤하우스 운영	이사
	이종원	전무	2022. 02.~현재	㈜앤하우스 운영	전무
	김병찬	감사	2021. 07.~현재	㈜앤하우스 운영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1년 12월 31일	6	3	14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앤하우스	가맹사업 경영	2010. 12. 1. ~ 현재	'앤하우스'(ANNHOUSE)이라는 영업표지의 경양식전문점 경영
			2013. 3. 1. ~ 현재	'파시야'(pasiya)이라는 영업표지의 빙수전문점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MEGA MGC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16. 03. 21. 등록	41-2015-0056157 4103529970000	(주)앤하우스	등록일로부터 10년
MGCMEGA		2016. 06. 24. 등록	41-2015-0056158 4103636120000		
엠지씨커피 MGC COFFEE		2018. 02. 07. 등록	40-2017-0058648 4013290670000		
MGC COFFEE		2018. 02. 07. 등록	40-2017-0058647 401329066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사업 현황

1.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를 시작한 날: 2016. 3. 09.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5년 12월 22일)

2.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앤하우스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하형운	2016.3.09.~ 2017.12.19.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2길 6 2층(서교동)
		하형운	2017.12.20.~2021.07.0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81, 1층
		김대영	2021.07.02.~2022.11.1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81, 1층
		김대영	2022.11.18.~현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518, 11층

3.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업종

영업표지	업종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오픈일 기준)

지역	2019.12.31.			2020.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01	798	3	1188	1184	4	1603	1593	10
서울	114	111	3	207	203	4	357	347	10
부산	62	62	0	74	74	0	82	82	0
대구	16	16	0	20	20	0	23	23	0
인천	106	106	0	144	144	0	170	170	0
광주	45	45	0	61	61	0	73	73	0
대전	11	11	0	17	17	0	25	25	0
울산	4	4	0	7	7	0	6	6	0

세종	5	5	0	8	8	0	11	11	0
경기	251	251	0	387	387	0	510	510	0
강원	24	24	0	33	33	0	42	42	0
충북	9	9	0	27	27	0	43	43	0
충남	35	35	0	36	36	0	48	48	0
전북	22	22	0	27	27	0	37	37	0
전남	18	18	0	39	39	0	56	56	0
경북	26	26	0	33	33	0	36	36	0
경남	37	37	0	47	47	0	58	58	0
제주	16	16	0	21	21	0	26	26	0

5. 바로 전 3년간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점 수

(단위: 개, 오픈일 기준)

연도	연초 (1월 1일)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19	403	398	0	3	55	798
2020	798	397	0	11	101	1,184
2021	1,184	417	0	8	115	1,593

6.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9.12.31.	2020.12.31.	2021.12.31.
가맹본부	(주)앤하우스	앤하우스	20110100140	경양식 전문점	0/0	0/0	0/0
가맹본부	(주)앤하우스	파시야	20130100419	빙수 전문점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1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1년 말 가맹점 수	2021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1,593	328,912	20,250	1,008,174	201,635	43,117	3,318	1,356
서울	347	377,052	23,838	1,008,174	201,635	65,920	9,161	261
부산	82	236,745	15,352	870,209	76,703	47,699	5,229	78
대구	23	200,448	13,955	329,331	26,626	62,968	5,724	22
인천	170	358,175	22,048	582,358	91,700	140,328	6,031	155
광주	73	327,386	19,068	642,236	57,449	138,782	9,044	65
대전	25	284,621	19,296	478,384	48,812	127,803	11,618	20
울산	6	185,324	10,899	409,790	15,694	79,187	7,311	6
세종	11	256,584	16,811	449,962	25,400	109,384	9,510	9
경기	510	354,834	22,386	652,290	77,588	126,341	4,099	438
강원	42	302,461	17,619	583,951	39,627	60,188	4,630	34
충북	43	305,894	15,233	460,980	28,714	167,142	9,373	37
충남	48	320,496	21,260	643,554	47,072	43,117	5,390	40
전북	37	237,382	13,411	386,136	29,674	65,402	4,360	30
전남	56	352,128	17,602	655,171	76,139	46,779	3,598	49
경북	36	205,476	13,123	363,181	42,892	66,368	3,318	35
경남	58	198,781	12,738	439,560	43,956	50,279	4,190	54
제주	26	289,861	15,326	454,192	47,230	103,299	6,076	23

상기 자료는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6개월(180일)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영업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가맹점 237곳은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593개가 아닌 실제 1,356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1년	1,593개	77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호남	메가커피 호남지사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치평동 1217번지,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천영란	062-385-0030		X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1년]에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단	내 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광고	광고선전비	가. 2021.1.1~2021.12.31	1,189,212
	판매촉진비	나. 2021.1.1~2021.12.31	
	소계		**1,189,212**

해당 금액은 메가엠지씨커피,파시야,앤하우스에 대한 광고비 및 판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가맹금예치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앤하우스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과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가맹본부	보증보험	확정 금액
오픈 교육비	가맹본부	보증보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보증보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보증보험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가입비,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제공 대가)	5,500	계약체결일까지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위약벌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기존 가맹점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 가맹비 : 3,300**
오픈 교육비	3,300	계약체결일까지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위약벌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가맹금의 10%의 위약벌 및 지출된 실비용을 공제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현금)보증금	2,000	계약 체결시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800
가맹비	5,500
오픈 교육비	3,300
(현금)보증금	2,000(부가세없음)

*기존 가맹점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 가맹비는 3,30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5,990				확정되어 있는 기자재,최초 공급상품 및 비품비용만 포함
기자재	(주)앤하우스	29,700				
간판	(주)앤하우스	5,500				4미터 기준
인테리어 설계 및 도면디자인	(주)앤하우스	10평 기준: 2,750	275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비공개)	10평기준 : 15,400	1,540	1. 계약금: 공사/공급 계약체결일	공사전 계약취소	공사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그 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인테리어	협력업체	업체기준에		2. 잔금:		철거,

(추가공사)	(비공개)	따름		오픈전일		계단/복도, 화장실, 외장, 소방, 전기승압, 가스 냉난방기, 의탁자 등은 점포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초 비품 비용	(주)앤하우스	2,640		매장 오픈전	상품 미공급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타 개점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주)앤하우스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가맹계약 취소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평당 275,000원(VAT포함)을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개발사업부 (전화:02-335-0656)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월 16.5만원	매월	-	-	-
광고 분담금	당사	광고금액을 각 매출액 또는 직영점과 가맹점 수로 균분	-	-	-	-
판촉분담금	-	기획비용은 당사 부담이고, 제작비용은 가맹점 부담 그 밖의	-	-	-	-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비공개)**	각 채널별 수수료율 (4%~9.4%)	월 2회 (1~15일, 16~말일/+3 영업일)	-	-	-
교육훈련비	당사	교육시에 협의	교육 실시일 이전	-	-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필요시 협의	간판 변경 일까지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공사 내용에 따라 협의	교체・보수 공사 3일 전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POS/KIOSK 사용료	**(비공개)**	11	매월 말일	-	-	기계를 대여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	-
인테리어 보수비용	해당업체와 점주간 직접정산	-	-	-	인테리어 보수 필요시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제할 경우	교육 개시 후	추가교육 필요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 앤하우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요구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오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신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기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 및 위약벌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 중 스펙/기준 지정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품질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스펙과 기준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거래처 지정 품목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메가엠지씨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년도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표' 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또는 만 19세미만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해지도 가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4.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기본메뉴'를 확인하십시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전문점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250미터 또는 별첨 작성 (입점 당시 해당 범위 내 특수 상권이 있는 경우는 별도상권으로 분리)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사용한 가맹점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1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메가엠지씨스틱 오리지날 아메리카노	
2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메가엠지씨스틱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3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메가엠지씨스틱 스테비아 믹스커피	
4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메가엠지씨스틱 스테비아	

			디카페인 믹스커피	
5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머그컵(검정)	
6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머그컵(노랑)	
7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텀블러(실버)	
8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텀블러(브론즈)	
9	MGC 회원몰	megamgccoffee.co.kr	텀블러(화이트)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1	99.5	0.5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1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씩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9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9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9조 1항 3호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9조 1항 3호 나목
○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9조 1항 3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9조 1항 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영업개시의무(계약서 16조)를 위반한 경우	16조 39조 1항 1호
○ 귀하가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의 반복적인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경우	39조 1항 2호
○ 귀하가 영업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9조 1항 3호
○ 귀하가 지정된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39조 1항 4호
○ 귀하가,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원부자재 이외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39조 1항 5호
○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	39조 1항 6호
○ 귀하가 주요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9조 1항 7호
○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제45조 제6항 위반)	39조 1항 8호
○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9조 1항 9호
○ 귀하가 당사와 동종경쟁업종의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39조 1항 10호
○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체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39조 1항 11호
○ 귀하가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2기 이상 미납하는 경우	39조 1항 12호
○ 가맹계약에 기하여 당사에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9조 1항 1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0조 1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0조 1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0조 1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0조 1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1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1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0조 1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40조 1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0조 1항 9호

당사의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40조 2항 1호
○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0조 2항 2호
○ 당사가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40조 2항 3호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당사와 귀하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아래의 경우에 상호 합의하에 가맹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귀하가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47조 1항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7조 2항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통지 없으면 거절로 간주)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사업부 (02-335-0656)

[양도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동일조건으로 당사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의 상속 통지 → 상속인의 자격 검토 → 교육, 훈련 등 → 영업 상속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오픈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는 한 금지	-	-	-
업무위탁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는 한 금지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커피,음료 및 이에 부수하는 디저트 등을 제공하는 업종	없음	문의: 개발사업부 (02-335-0656)

귀하가 이를 위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시스템, 운영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동종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에도 당사에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4:00 (14시간)	주 5일, 월 22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부 (02-335-06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공동광고 행사	상품광고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당사의 직영점 매출액과, 각 가맹점의 매출액(POS 기준)에 비례하여 분담하거나,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 수로 균분한다. (광고 등의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 포스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합니다)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광고집행 및 안내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공동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은 당사 부담이고, 제작비용은 가맹점 부담 그 밖의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 행사

[원칙적으로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 선전의 소재 및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용 일체는 당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시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가 계약기간 중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가맹계약의 이행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가 계약이 종료에 따른 각종 의무(운영 중단,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 중단 및 이에 대한 철거, 운영메뉴얼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일체의 자료 반납 등, 상세한 내용은 가맹

계약서 제42조 참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1일당 금 3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의 귀책사유없이 귀하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 43조 제5항 참고)

⑥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 43조 제6항 참고)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합계		3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8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 작성(가맹본부용, 가맹희망자용) - 가맹희망자 상담	D-3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 개설승인	D-24(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3(1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2(1일)
가맹금 예치	- (물류)이행보증금, 교육비 지불 - 예치가맹금반환 보증보험 발행	D-22(1일)
인테리어 설계	- 설계/도면디자인	D-24~21(4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1(1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 실시	D-21~0 (21일)
장비/홍보물/비품 및 간판 설치	- 장비입고 및 간판 작업	D-3(1일)
교육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08~06(3일)
점포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 또는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포 환 경 개 선 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포스장비, 스피커 등의 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매장상황에 따름	매장상황에 따름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부 (02-335-065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부 (02-335-0656)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가맹점 공급가 인하	가맹점 부담 절감 위해 협력사 소통, 매년 주요 품목 공급가 인하 실시	전 가맹점 혜택	진행 기준일 이후 지속	주요 품목 공급가 인하	2017년 19개, 2018년 17개, 2019년 15개, 2020년 32개, 2021년 40개 품목 인하 진행
우수 가맹점 선정	분기별 우수 가맹점 선정 및 포상	가맹점 매출 규모, 신장율, QCS 등의 기준으로 분기당 4개, 연간 총 16개 우수가맹점 선정	연간 4회	100만원 상당의 원두 포상 및 우수가맹점 명패 수여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기초교육	1일 8시간 /3일	3,300	최초 가맹계약시 이수 양도 양수시 이수
보수교육	협의 후 결정	협의후 결정	필요시 수행
특별교육	협의 후 결정	협의후 결정	필요시 수행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3조에 따라 개점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5조에 따라 개점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1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28일	2021년 신규 직영점 6곳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1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87,420	POS기준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5개 직영점 기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전략기획팀(02-335-065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annhouse.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당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019년, 2020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표

귀하가 아래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기본메뉴

귀하가 아래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아메리카노	1,500/2,000	이메일 또는 공문서 발송	커피류, 음료류를 취급하고 있음
카페라떼	2,700		
티라미수라떼	3,900		
메가초코	3,800		
오레오초코	3,900		
딸기라떼	3,500		
자몽에이드	3,500		
메가에이드	3,900		
쿠키프라페	3,900		
딸기요거트스무디	3,900		
딸기바나나	3,800		
초코바나나	3,800		
핫도그	2,200		
이 외 70여개 상품			

(*) 상위 가격은 2021년 12월 기준 표준 가격입니다. 가맹점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격 통보 방법 : 이메일 또는 공문서 발송